

「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1) 사무명 :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
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3)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업무 전반

가)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나) 창업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

다) 컨설팅, 콘텐츠 제작, 현지 체류비 지원

라)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·변경·해약

마)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·관리 등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1. ~ 2027. 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2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120	24	12	84	

- 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.12.26)
- 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- 9) 부서의견 :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
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
적합하다고 판단됨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
 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-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 - 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-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 - 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- 본 동의안은
 -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업발굴, 선정,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창업관련 데이터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경험이 있어 적합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2024년도 지원 실적이 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5년도에는 4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,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, 성과 관리 및 지도·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동의안 심사에 한계가 있는 바, 성과평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차년도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.
- 비용추계서가 미흡하여 재정 소요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, 인건비 및 간접비 등 주요 항목의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이 부족하므로 보완 필요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